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4. 9. .

의결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계획서(안)

제안연월일	2014. 9. 18
제안자	조사특별위원장

목 차

1. 조사의 목적	2
2. 조사기간	2
3.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2
4. 조사내용	3
5. 조사위원회 구성	3
6. 조사일정	4
7. 조사방법 및 조사 진행순서	4
8. 조사결과 처리	5
9. 소요경비	5
10. 기타 필요한 사항.....	5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 사 계 획 서 [안]

1

조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OL복지재단 법인 산하 솔장애인 생활시설을 비롯한 구미시 보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14. 9. 18 ~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3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

가. 조사대상

-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관련 부서
-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나. 사무범위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보조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 2010년 이후 보조금의 증액지원 및 신규지급 단체 조사
- 보조금 지급 시 지급기준 준수여부 확인
-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 관리실태 및 감독사항
※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 등
- 보조금 지급 시설 및 단체의 실제 활동사항 점검
- 보조사업 정산관리 점검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위 원 장	박 교 상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 승 수	기획행정위원회	
위 원	김 복 자	“	
	김 상 조	산업건설위원회	
	김 재 상	“	
	김 정 곤	“	
	박 세 진	기획행정위원회	
	손 홍 섭	“	
	안 장 환	산업건설위원회	
	윤 종 호	“	
	정 하 영	기획행정위원회	
사무보조자	백 승 해	의회운영전문위원	
	이 경 호	행정 7급	
	변 재 석	행정 8급	
	이 미 옥	속 기 사	

6

조사일정

일 정	대상기관	조사장소	조사방법	비 고
2014. 9. 12	-	조사위원회실	· 조사 및 활동계획 수립	
9. 13 ~ 9. 23	조사대상기관	“	· 1차 기초 조사활동 ·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	
9. 24 ~ 10. 31	조사대상기관	“	· 2차 심화 조사활동 · 서류 확인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 증인, 참고인 등 출석 및 증언	
11. 13 ~ 11. 24	조사대상기관	“	·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의회 보고 준비	

※ 조사활동 중 조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7

조사방법 및 조사 진행 순서

가. 조사방법

1. 조사대상기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2.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검토
3. 증인출석요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및 업무 관련자의 의견 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4. 조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질의형식으로 진행
5.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로 비공개 가능
6. 필요시 현장 방문(관계공무원 동행)

나. 조사진행순서

1. 조사 실시 선언 및 증인 선서
2. 일반사항 및 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3.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증인신문 및 증언청취)
4. 조사종료 선언

8

조사결과 처리

- 조사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은 구미시장에게 통보
- 문제점 발견 시 해당기관 조사의뢰

9

소요경비

- 조사위원회 활동경비(간담회, 토론회 등), 사무보조자 지원경비, 증인 등의 지급비용 등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 기준에 따름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증인 출석요구

-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되는 구미시 관계공무원과 시설 관계자
 - ※ 추후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함
- 증인출석 요구서(안) : “붙임1”

나.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 1인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조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선서(안) : “붙임2”

다.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조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되도록 함

라.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본회의 보고·채택

-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의결(채택) 후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의결(채택)

증인출석요구서(안)

귀 하

구미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2014. . . ~ . . .
(기간 중 필요시 출석요구)
2. 출석장소 :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실
3. 출석방법 : 조사기간 중 필요에 따라 출석

2014. . .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선 서 [안]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인)